

제321회 임시회
2013. 6. 18.(화)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6. 18.(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임현 의원 외 6인

나. 제출일자 : 2013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6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6월 12일

-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현 의원)

가.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에 의하여 과징금징수 업무가 종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명시되어, 조례 제5조의 과징금 부과·징수의 시장·군수에 위임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에 의거, 관광진흥법 관련업무 등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조례에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추가
 - 관광진흥법 제35조 → 관광진흥법 제37조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변경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금번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의하여 과징금징수 업무가 종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조례 제5조의 과징금 부과·징수의 시장·군수에 위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에 의거, 관광진흥법 관련업무 등에 대한 광역시·도지사의 업무 근거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관광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관광진흥법</u>」 제35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u>」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u>관광진흥법</u>」 제37조제1항에 <u>따른</u>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생략)</p>	<p>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u> 천재지변 기타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수한 사정 이라 함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p>1. ~ 4. (생략)</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p>	<p>제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① (생략)</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천재지변 기타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수한 사정 이라 함은 다음 <u>각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에 따라</u>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과징금 처분대상) 도지사는 「<u>관광진흥법시행규칙</u>」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p> <p>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등) ① <u>도지사는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내부위임) 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징수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u></p> <p>③ <u>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u></p>	<p>제4조(과징금 처분대상) 도지사는 「<u>관광진흥법시행규칙</u>」 제43조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p> <p>제5조 (삭제)</p>
제6조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5호, 제7호, 제9호, 제12호, 제18호의 사무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2, 2011.4.14, 2011.7.21>

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 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1.3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는 법 제27조 및 이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사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받은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8.5>

□ 관광진흥법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유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다.